

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통 보

제 목 경력경쟁채용 소방공무원 전보제한 규정 준수 소홀

기 관 명 충청남도(소방본부)

내 용

「소방공무원법」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지방소방공무원은 시·도지사가 임용권자이고, 시·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의 일부를 관계 하급기관 또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.

그리고 소방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은 같은 법 제6조제2항, 「소방공무원임용령」제15조¹⁾, 제25조²⁾제4항, 제28조³⁾의 규정에 따라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고, 이렇게 채용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직위 또는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.

따라서 구급분야 경력경쟁방식으로 채용된 소속 구급대원에 대한 인사업무를 시행함에 있어 당초 채용목적, 보유자격증, 소방 수요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은 물론, 소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용분야별 전보 제한

-
- 1)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(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)임용예정분야별 자격증 소지자나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채용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.
 - 2)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5조 제4항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.
 - 3)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(필수보직기간 및 전보의 제한) 제3항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은 최초로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직위 또는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.

기준, 보직관리 원칙 등도 준수하여 인사업무를 하여야 한다.

그런데 충청남도 소방본부 및 천안○○소방서 등 10개 소방서에서는 최근 3년간 현장 구급대원으로 채용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전보제한 기간 내에 있는 소방공무원을 다른 보직으로 전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.

조치할 사항 **충청남도지사는**

[통보]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임용된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시 전보제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.